

A-8 :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규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 정 2000 .5.22

제 정 내 용	비 고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명시토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감사위원회 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의구성, 운영, 권한, 책임 등에 관하여 내용을 감사위원회헌장(Audit Committee Chater)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과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회의 소위원회임.
제3조(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외부감사인선임을 제청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표준정관 제41조의3 -상법 제41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 -상법 제393조의제2항
제 2장 구 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3항의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1 제1항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의17 제2항, 제54조의6 제2항및 제3항, 표준정관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 정 내 용	비 고
④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1. 사외이사 아닌 원위의 결원인 경우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충원하고자 할 때는 제4항과 달리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여야 하나, 사외이사로 위원을 충원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음. 2.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5조의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제4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총수 중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한다.	-증권거래법 제191의17 제2항, 제54조의6 제4항 참조 -이에 대해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91의16 제3항, 제54조의5 제5항을 참조
제5조(해 임) 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 아닌 위원의 해임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사외이사인 위원과 달리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음.	-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제385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6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회사에서 달리 정할수 있음.	-상법 제415조의2 제4항 표준정관 제41조의2 제5항

제 정 내 용	비 고
제3장 회 의 제7조(종 류) ①위원회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정기위원회는 (매분기 첫째월 제4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③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주) 정기위원회의 개최시기는 회사의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기업지배구조 모범 기준 1.5
제8조(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권자 준용 -상법 제309조 제1항
제9조(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주) 1. 위원회 소집의통지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사회 소집의 통지기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통지방법과 통지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09조 제2항 -상법 제390조 제3항
제10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면,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 결의방법 준용 -상법 제391조 제1항, 제2항

제 정 내 용	비 고
제 11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 재산·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소주주주의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임제청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의 대한 동의	-상법 제412조의3 -상법 제413조 -상법 제391조의2 제2항 -상법 제447조의4 -상법 제402조 -상법 제412조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상법 제412조 제2항 -상법 제412조의4 -상법 제412조의2 -상법 제394조 -상법 제403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제12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5 -상법 제415조의2 제5항

제 정 내 용	비 고
제13조(의사록)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상법 제393조의2 제5항, 제391조의3
제 4장 보 칙 제 1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감사의 감사기준 제18조
제 15조(전담부서의 설치등)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413조의2
제17조(규정의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	

